

#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23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  
발의자: 김경, 김기덕, 김원태,  
김인제, 박승진, 서상열,  
성희제, 송재혁, 오금란,  
유정희, 임만균, 최재란,  
한신 의원(13명)

### 1. 제안이유

- 2024년 5월 20일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시행됨에 따라 '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'의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신설(안 제45조 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무료이용)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5조(무료이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
8. ~ 22. (생 략)	9. ~ 23. (현행 제8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'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'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규정에 의한 세입감소 여지<sup>1)</sup>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 (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)에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현행 같은 조례 제4조제2항<sup>2)</sup>에 의거한 이용료 징수사례 (舊시민청 기준)가 없고, 현재로서는 향후에도 별도의 이용료 징수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해당규정이 서울시 세입감소의 실질적인 요소<sup>3)</sup>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손재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**

1) [무료대상 확대에 따른 세입감소 검토 필요성] 현행 「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 갤러리 이용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, 제2항에 곧이어 자체기획, 대관자 개최 특정전시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 특정전시회 등 관련수입 및 감면예정 대상의 유료이용 통계 등을 토대로 세외 수입 감소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

2) [관련규정 내용] 이용료 징수관련 규정

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

제4조(이용료) ① 서울갤러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, 공연,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